



# 규정

## 학과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문서번호	TWP-A704
제정일자	2016. 02. 18.
개정일자	2020. 07. 21.
개정번호	3
페이지	1/6

### 목 차

- 제1장 총칙
- 제2장 구조조정위원회
- 제3장 구조조정 절차
- 제4장 폐과 및 처리  
부칙

작성부서	기획처	제정일자	2016. 02. 18.
------	-----	------	---------------

구 분	작성	검 토						승 인
직 책	담당	교무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처장	학생취업처장	입학홍보처장	사무처장	총 장
서 명								
일 자								



규정

학과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문서번호 TWP-A704


제정일자 2016. 02. 18.

개정일자 2020. 07. 21.

개정번호 3 페이지 2/6

개정이력

개정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1	2016. 10. 13.	- 구조조정 진행 절차 구성 추가 - 전공명칭변경 및 신설학과의 기준과 범위 구성 추가 - 구조조정 기준의 지속적 검토와 개선내용 구성 추가
2	2018. 02. 19.	- 2018년 1월 1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한 전면 개정 기획홍보처 → 기획처, 입학관리센터 → 입학처 학생처/학생취업처 → 학생취업처 - 전공주임교수 → 학과장 변경
3	2020. 07. 21	-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 평가에 의한 균별 분류 평가 방법 삭제 등 구조조정 절차 체계화

	<b>규정</b>	문서번호	TWP-A704
		제정일자	2016. 02. 18.
	<b>학과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b>	개정일자	2020. 07. 21.
		개정번호	3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수요변화와 학령인구 감소 등 대내외 교육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학과의 구조조정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구조조정”이라 함은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학과의 신설, 통합, 폐과, 명칭변경, 정원조정 등 학과의 구성을 조정함을 말한다.

② “학과”라 함은 대학의 편제에서 교육과정 등에 따라 모집단위를 구분한 것을 의미한다.

③ “신설”이라 함은 학과가 새로이 설치되는 것을 의미한다.

④ “통합”이라 함은 2개 이상의 학과가 하나의 학과로 합치는 것을 말한다.

⑤ “폐과”라 함은 학과의 학생모집을 폐지함을 의미한다.

⑥ “명칭변경”이라 함은 학과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⑦ “정원조정”이라 함은 학과 입학정원의 증원 및 감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대학구조조정의 적용대상은 학칙에서 정하고 있는 학과로 한다.

② 구조조정은 학과의 신설, 통합, 폐과, 명칭변경, 정원의 증감을 말하며, 그에 따른 교원의 신분 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구조조정의 원칙)** ① 구조조정은 다음 원칙에 의한다.

1. 대학교육과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2.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지침 순응
3. 대학발전계획에 의한 정책의 수행
4. 대학재정의 효율적 운영

## 제2장 구조조정위원회


**제5조(설치)** 대학은 구조조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기획처장, 교무처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포함 하며,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 소속 계열(학과)을 고려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하고, 간사는 기획처 직원으로 한다.

	<b>규정</b>	문서번호	TWP-A704
		제정일자	2016. 02. 18.
	<b>학과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b>	개정일자	2020. 07. 21.
		개정번호	3

**제7조(기능)** 구조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학과의 신설, 통합, 폐과,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과의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3. 구조조정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조조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구조조정 기준의 지속적 검토와 개선)** ① 구조조정위원회 및 주관부서에서는 구조조정 기준 및 진행절차, 지원사항 등의 타당성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한다.

② 구조조정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구조조정위원회 및 제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③ 변경내용은 총장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대학 전체에 공지한다.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경우 보직 재임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10조(사무처리)** 구조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기획처에서 주관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장 구조조정 절차

**제13조(구조조정 후보학과 선별)** ① 구조조정 주무부서는 학과 경쟁력 분석자료 등을 통해 본 조 제②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조조정 후보학과를 선별한다.

② 구조조정 후보 학과의 선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입생 충원율) 당해 연도 포함 2년 연속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이 90% 미만인 학과
2. (재학생 충원율) 최근 3년간 2회 이상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이 대학평균 미만인 학과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 자료 기준)
3. 학과 경쟁력 분석 지표, 원가분석 결과 등의 성과가 현저히 낮은 학과
4. 사회, 산업수요 등에 의해 발전가능성이 낮은 학과
5. 학과 자율적으로 학과의 통합, 폐과, 명칭변경, 정원조정 등 구조조정을 신청한 학과

	<b>규정</b>	문서번호	TWP-A704
		제정일자	2016. 02. 18.
	<b>학과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b>	개정일자	2020. 07. 21.
		개정번호	3

③ 구조조정 후보학과로 선별된 학과는 자구노력 계획서를 기획처로 제출한다.

**제14조(구조조정 대상학과의 선정)** ① 위원회는 구조조정 후보학과로 선별된 학과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구조조정 대상학과를 선정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과는 폐과 대상학과로 선정할 수 있다.

1.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 2년 연속 90% 미만 (당해 연도 입시결과 포함)
2.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 2년 연속 대학평균 미만 (단, 기 정원 조정 학과 및 신설학과의 경우 선정 시 편제 완성년도 고려)
3. 취업률(정보공시기준) 2년 연속 대학 평균 취업률의 80% 미만
4. 학과 자율적으로 폐과를 신청한 경우
5. 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단, 위원회는 교내외 교육 및 산업환경변화, 인력수요동향, 대학발전계획 및 특성화 방향 등 다양한 요소 분석과 검토, 해당학과 교수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다.)

② 위원회는 구조조정 대상학과 선정을 위하여 학과 경쟁력 지표 분석 결과, 학과자구노력계획서, 학과 원가분석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구조조정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학과 또는 관련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구조조정의 진행절차)** ① 기획처는 매 학년도 구조조정 절차와 내용에 대한 계획안을 발의한다.


② 구조조정 위원회는 구조조정 후보학과 선별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학과를 선정하고 구조 조정 대상 학과의 학과 신설, 통합, 폐과, 명칭변경, 정원조정 등의 구조조정 결과를 교무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교무위원회는 구조조정 위원회에서 선정 된 구조조정 대상 학과의 자구노력계획서, 학과 경쟁력 분석자료 등을 기반으로 구조조정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16조(협의를 의한 구조조정)** ① 대학의 특성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과와의 협의에 따라 구조조정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조조정 주무부서는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학과 신설, 통합, 폐과, 명칭변경, 정원조정 등에 대한 학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4장 폐과 및 처리

	<b>규정</b>		문서번호	TWP-A704
			제정일자	2016. 02. 18.
	<b>학과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b>		개정일자	2020. 07. 21.
			개정번호	3

**제17조(폐과된 학과의 운영)** ① 폐과된 학과는 차 년도부터 신입생은 모집·선발 하지 아니한다.  
 ② 폐과가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학과의 재학생 및 복학생이 졸업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교원신분 및 지원)** ① 폐과된 학과 교원의 신분 유지를 위하여 다음 기준을 고려하여 지원하며,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1. 교원의 전공과 유사성이 있는 교과목 강의 우선 배정
  2. 전공과 유사한 교양과목 개설 시 강의 우선 배정
  3. 해당 전공의 자격을 갖춘 교원의 전공전환
- ② 겸임교원, 초빙교원 및 강사는 임용기간이 재학생 존속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임기를 재학생 존속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이 다수일 경우 교수업적평가 결과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